

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와 분양가 인하율이 10%이하인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규정을 한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(신설, 안 제6조제1항제2호 다목)
 - 감면대상 : 전용면적 85㎡ 초과와 분양가 인하율 10%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
 - 감면범위 : 취득세의 50% 감면
 - 감면기간 : 2011. 4. 30일까지
- ※ 취득금액에 제한이 없고 다주택 보유자도 모두 감면대상이 됨

4. 검토의견

이번에 일부개정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

동산 경기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분양가 인하율이 10% 이하인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1년 4월 30일까지 50%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○ 안 제6조제1항제2호 다목을 신설하여

-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㎡ 초과인 분양가 인하율 10%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며,
- 감면범위는 취득세의 50%를 감면하며,
- 감면기간은 2011년 4월 30일까지로 함.

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50% 감면 대상인 전용면적 85㎡ 초과인 분양가 인하율이 10% 이하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, 금번 개정조례안에 따른 취득세의 감소규모와 이에 따른 세입감소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